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17일, 조인철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4.9.4.)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9.9.) 상정, 제안설명, 대체토론,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조인철의원)

과학기술의 발전과 복잡성 증가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AI를 비롯한 미래 산업기술에 대한 통찰력과 융합적 기술 문제 해결 능력을 겸비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고 혁신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학 리더를 요구하고 있음.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과 「울산과학기술원법」은 급변하는 산업현장에서 실무능력과 통찰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광주과학기술원은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기존의 학위과정과 차별화된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광주과학기술원도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임명현)

지역의 실무인력에게 전문석사과정을 통하여 실무중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와의 협동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광주과학기술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심사소위원장 최형두)

타당함.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박사·석사 및 학사 과정을”을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과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박사·석사 및 학사 과정의”를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과정의”로 한다.

제16조 중 “박사·석사 및 학사 학위를”을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학위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학위과정 등) ① 광주과 기원에 <u>박사·석사 및 학사 과 정을 둔다.</u> ② (생 략) ③ 제1항의 <u>박사·석사 및 학 사 과정의</u>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 등교육법」에 따른다. 제16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박사·석 사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u>	제13조(학위과정 등) ① ----- ----- <u>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과정을</u> -----. ② (현행과 같음) ③ ---- <u>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과정의</u> ----- ----- ----- ----- -----. 제16조(학위수여) ----- ----- <u>박사·전 문석사·석사 및 학사 학위를</u> -----.